

RESEARCH ARTICLE

Improvement Direction of Transparency Obligation Provis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Amendment to Exemption Provisions

Myungsoo Kang^{1,2}¹Law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²Attorne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Myungsoo Kang (msk0906@pusan.ac.kr)

ABSTRACT

Transparency obligations are central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gulation. The Framework Act on AI and its Enforcement Decree outline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se obligations. While stipulating transparency obligations in legislation can promote legal stability, it also represents limitations in clearly defining applicable standards. Critics have highlighted the ambiguity of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noting that legal uncertainty will remain difficult to eliminate entirely, even if the relevant provisions are supplemented in the future. Furthermore, stipulating transparency obligations may hinder flexible responses to emerging technologies and unpredictable future scenarios. Crucially, the current mandatory-centric approach stems from a negative perception of AI technology and may be in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AI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erefore, the approach to AI transparency obligations should shift from mandatory regulation toward minimum safeguard framework that enable AI service providers to mitigate liability. Additionally, aligning with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the scope of exemption through voluntary guidelines should be expanded.

KEYWORDS

transparency obligations, soft regulation, obligation provision, exemption provision, online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Open Access

Received: July 28, 2026**Revised:** August 05, 2026**Accepted:** September 04, 2026**Published:** September 30, 2026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6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원저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의무 규정 개선 방안: 면책규정으로의 개정을 중심으로

강명수^{1,2}

¹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²변호사

교신저자 : 강명수 (msk0906@pusan.ac.kr)

차례

1. 서론
2. 투명성 의무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
 - 2.1. EU
 - 2.2. 미국
 - 2.3. 일본
 - 2.4. 중국
3.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의 규제 형식 전환 필요성 – 연성 규제의 방향
 - 3.1. 인공지능의 특징과 인공지능 규제 정립에서의 딜레마
 - 3.2. 인공지능 규제 법제의 방향성
 - 3.3. 현행 투명성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4.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에 대한 규제의 방향 – 의무규정에서 면책규정으로
 - 4.1. 투명성 의무에 관한 연성 대응의 한계와 보완 방향
 - 4.2. 저작권법상 OSP 책임 법리의 특징과 시사점
 - 4.3. 소결 –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의무 규정 개정안
5. 결론

국문초록

인공지능 규제의 주된 쟁점으로 투명성 의무가 있다. EU는 AI법에서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고 실천 강령 등 구속력 없는 형태로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일본과 중국은 법에서 선언적인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 규제에 의존한다. 이에 반해 우리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투명성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서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투명성 의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투명성 의무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법에서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면 향후 새로운 기술의 도래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투명성 의무를 현재와 같이 의무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전제된 것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활용촉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영역에서는 OSP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규제방식과 달리 OSP 책임제한이라는 면책규정의 형태로 그 해결책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OSP 책임제한 법리는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에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를 지금과 같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전환하고 그 이외에도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같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등에 의한 면책 가능성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주제어

투명성 의무, 연성 규제, 의무규정, 면책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서론

2025. 1. 21.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함)은 EU의 AI법¹⁾ 이후 국가 차원의 선도적인 규제 법규로서 우리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및 관련 법제 분야에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중심인 EU AI법에 비해 규제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규제의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만 보면 마치 우리법이 AI 규제와 발전을 모두 잘 포용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출현과 그 본격적인 발전이 분출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즉, 인공지능 기술의 유용성과 그 파급력,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위력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 규제와 발전 촉진을 조화롭게 입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 우리법은 두 가지 상반된 요청을 다 포섭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지만, 규제 내용의 미완 결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판²⁾ 및 개선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기술 발전 및 활용 촉진의 필요성 vs AI 활용에 따른 피해 억제와 규제의 필요성)을 관련 법제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전반을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여기서는 현재 인공지능분야 규제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투명성 의무를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 기술 개발 및 활용 자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제대로 표기하고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이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입장이 대립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현재는 이중 후자, 즉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표시 및 고지의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러한 방향의 논의 및 법제 정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혼란의 최소화 및 신뢰성 증대를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주류적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규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투명성 의무의 법제화 및 구체화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규제 마련의 초기 단계인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투명성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규제 수준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법 규정에서 일반적(모든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이고 구체적인 투명성 의무 규정을 둔다면, 자칫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그렇다고 하여 투명성 의무에 대한 법제 정비를 방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법제의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투명성 의무의 구체적 법제화가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규정은 연성 규범의 형태로 하여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분야별 자율적인 규제(가이드라인 등)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법 설계를 하는 것이고, 둘째, 법 규정도 지금과 같은 책임규정이 아닌 인공지능사업자가 준수하면 면책이 되는 소위 ‘면책규정’의 형태로 하는 것이다. 후

1) EU AI법은 2024년 8월 1일 발효되며, 12개월 후인 2025년 8월부터는 범용(General Purpose AI) AI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파운데이션 모델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 문서 작성, 투명성 확보, 리스크 평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이어 발효 24개월 후인 2026년 8월에는 의료, 자율주행, 교육 등 고위험 AI 시스템(High-Risk AI Systems)에 대한 규정이 시행된다. AI 기반 의료기기와 같은 특정 고위험 제품에 대한 규정은 발효 36개월 후인 2027년 8월부터 적용된다(김현경,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KISO 저널」, 제58호(2025), 12-20면).

2) 인공지능기본법은 애초에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어서 개선 입법을 전제로 입법이 된 것이다. 정준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1면.

자와 관련하여서는 의무규정보다 면책규정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최소한의 통일된 기준 마련에 적절하고,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규제와 책임이 아닌 발전과 촉진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보면 연성 규제 중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투명성 규제를 의무가 아닌 면책중심으로 하는 법제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견해가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규제 중심의 일관된 논의 흐름에 새로운 검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투명성 규제 마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투명성 의무에 관한 규제 동향을 먼저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연성 대응의 필요성을 찾아보고, 나아가 투명성 규정을 의무규정이 아닌 면책규정의 형태로 입법할 필요성과 그 개정 의견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투명성 의무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³⁾

2.1. EU

EU AI법은 2024. 6. 13. 제정되어 같은 해 8. 1. 발효되었으며, 투명성 의무는 발효일 후 2년이 지난 2026. 8. 2.부터 적용된다.⁴⁾ 투명성 의무의 경우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 의무로 구분되고 또한 법 규정 이외에 실천 강령을 통해 구체적인 의무 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즉, 일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의무는 제50조⁵⁾에서 규정하고 동조 제7항에 근거하여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EU AI법 제5장(제51조~제56조)에서 규정하는데 제53조에서 투명성 의무를, 제56조에서 인공지능 사무국의 실천 강령 제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2.1.1. 일반 인공지능 투명성 실천 강령 및 가이드라인

제50조에 의하면 (1) 인공지능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할 때, (2) 인공지능이 합성 콘텐츠를 생성할 때, (3) 인공지능이 감정 인식이나 생체 분류에 사용될 때, (4) 인공지능이 딥페이크⁶⁾를

3) 투명성 의무는 인공지능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주요국가의 투명성 의무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법 개선 방향 도출에 중요한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투명성 의무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입법의 방향성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주요국가의 투명성 의무 법제에 대해서도 내용보다는 방향성 중심으로 살펴본다.

4) European Commission, "Draft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certain AI systems under Article 50 of Regulation (EU) 2024/1689 (the 'AI Act')", European Commission, 2026, p. 4.

5) 제50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의무	예외
1항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자	AI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알 수 있도록	인식가능한 경우, 범죄 수사 등(예외 있음)
2항	GAI 시스템 제공자	AI 산출물임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감지할 수 있도록 보장	GAI를 보조적으로 이용, 범죄 수사 등
3항	감정 인식 또는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배포자	시스템의 작동 방식 고지, 개인 데이터 처리 기준 준수	범죄 수사 등
4항	1) 딥페이크 등 시스템 배포자 2) 공익 목적 시스템 사용자	1) AI 산출물임을 공개 2) AI 산출물임을 공개	1) 범죄 수사 등, 예술적 작품 등의 경우 2) 범죄 수사 등, 인간의 검수 등
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에 대해 '늦어도 최초 상호작용 시점 또는 노출 시점'까지 고지		
6항	제3장(고위험 AI) 준수 의무와 별개 의무임		
7항	인공지능 사무국 실천 규범 제정 장려 및 지원		

6) 제3조(60)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존 인물, 사물, 장소, 단체 또는 사건과 유사하고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

만들거나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텍스트를 게시할 때 등 4가지 상황에서 투명성 의무를 부담하며, 내용적으로는 (1) 사람이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제50조 제1항), (2) AI가 생성한 합성 콘텐츠 표시(제50조 제2항), (3) 감정 인식 및 생체 인식 분류 공개(제50조 제3항), (4) 딥페이크 및 AI 생성 공익 텍스트 라벨링(제50조 제4항)으로 되어 있다.

제50조 제7항을 근거로 하여 EU는 ‘AI ACT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을 제정해 왔는데, 실천 강령은 제50조 제2항 및 제4항의 의무준수 입증 수단으로 기능하며⁷⁾ 다만 실천 강령 준수가 해당 의무 충족의 결정적 근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⁸⁾ 2026. 6. 10. 실천 강령 발표까지의 진행 경과를 보면 (1) 2025. 9. 실천강령 마련을 위한 컨설팅 등 진행, (2) 2025. 10. 참여 당사자들의 적절성 체크 및 참여자 선정, (3) 2025. 11. 5. 초안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 개시, (4) 2025. 11. 17-18. 워킹 그룹 1차 미팅, (5) 2025. 12. 17. 1차 초안⁹⁾ 발표,¹⁰⁾ (6) 2026. 1. 12.-14. 2차 초안 협의 개시, (7) 2026. 3. 5. 2차 초안¹¹⁾ 발표(3월 30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예정, 투명성 규정은 2026. 8. 2.부터 시행 예정 명시¹²⁾), (8) 2026. 6. 10. 실천강령 발표(2026. 8. 최종안 예정)인데,¹³⁾ 투명성 의무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 1차 초안에서는 표시 및 탐지를 위한 기술적 솔루션이 ㉠ 실효성(effectiveness), ㉡ 호환성(interoperability), ㉢ 견고성(robustness), ㉣ 신뢰성(reliability)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였으나,¹⁴⁾ (7) 2차 초안에서는 단일 기술만으로 위 4가지 요건의 동시 충족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면서 제공자로 하여금 보안 메타데이터 삽입과 워터마킹을 결합한 2층 구조(two-layered marking approach)를 핵심 의무로 채택하였다.¹⁵⁾ 2026. 6. 10. 발표된 실천 강령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와 배포자를 구분하여 (1)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정보 기록, 회피 도구 금지, 탐지 솔루션 무료 제공, 이행의무 준수 절차 문서화 및 최신 상태 유지, 교육 실시, (2) 배포자에 대해 딥페이크 및 AI 조작 텍스트에 대한 사실 공개, EU 제공 아이콘 사용, 관련 지침 준수, 정보공개 의무 관련 내부 프로세스 유지 및 위반 사정의 신속한 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⁶⁾ 그 이외에

작된 AI 생성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말한다.

- 7) European Commission,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6, pp. 1-38.
- 8) European Commission, “Second Draft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6, p. 7;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e EU AI Act’s Transparency Rules: A Practical Guide to Article 50”,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transparency-rules-article-50/>>, 검색일: 2026. 7. 28.; 서홍석, “AI 콘텐츠는 어디에서 왔는가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프로비넌스(provenance)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법제』, 제713호(2026), 203면, 주 36.
- 9) European Commission, “First Draft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5, pp. 1-32.
- 10) 1차 초안에는 제50조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마련을 하면서, 배포자와 이용자들이 준수하고 협력해야 할 기술적, 절차적 요건,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요건도 함께 정하고 있다. 짧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초안과 최종본에서는 현재 1차 초안보다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하였다. 박준우, “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 초안(1차) 공개”, 이슈리포트 2026-2,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 8면.
- 11) European Commission, “Second Draft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6, pp. 1-36.
- 12)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ublishes second draft of Code of Practice on Marking and Labelling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commission-publishes-second-draft-code-practice-marking-and-labelling-ai-generated-content>>, 검색일: 2026. 7. 28.
- 13) European Commission,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6, pp. 1-38.
- 14) European Commission, “First Draft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5, p. 14-16.
- 15) European Commission, “Second Draft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6, p. 10.

도 실천 강령에서는 AI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배포자의 의무 준수 지원을 위해 기본 AI 생성 표시, 완전 AI 생성 콘텐츠, 부분적 AI 수정 콘텐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식 AI 콘텐츠 라벨링 아이콘 세트도 공개했다.¹⁷⁾

한편, AI법 제96조 제1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하 “집행위”)가 AI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집행위는 금지된 AI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Prohibited AI Practices under the AI Act),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The guidelines on the AI system definition)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였고, 또한 AI 리터러시 실천 사례 상시 저장소(living repository of AI literacy practices)를 발간한 바 있다(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¹⁸⁾ 그리고 투명성 의무에 관하여는 2026. 5. 8. 가이드라인 초안¹⁹⁾을 공개했고(6월 3일까지 의견 수렴²⁰⁾), 최종본은 2026년 8월 마감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²¹⁾ 동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법 제96조(1)(d)²²⁾에 따라, 관할 당국과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가 인공지능법 제50조에 따른 투명성 의무를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통일된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본 지침도 구속력은 없으며 최종적인 해석은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단에 따른다.²³⁾ 이 지침은 법적 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실천 강령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실천 강령과 병행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²⁴⁾

2.1.2. 범용 인공지능 투명성 실천 강령 및 조화표준

EU AI법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제51조~제56조), 투명성 의무는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a) 최신 상태 유지 의무, b) 인공지능 시스템 통합자에 대한 정보 및 문서 작성, 최신 상태 유지 의무, c) 저작권 보호 등 정책 마련, d)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 요약 정보의 일반에 대한 공개 제공 의무를 규정한다. 일반 인공지능에 관한 투명성 의무와 비교해 보면, 1) 학습·검증·테스트

16) Hugo Grattirolo, “The AI Transparency Code Of Practice”, Philip Lee LLP, <<https://www.philiplee.ie/the-ai-transparency-code-of-practice/>>, 검색일: 2026. 7. 27.

17) European Commission, “EU Icons for labelling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 검색일: 2026. 7. 27.

18) 강태욱 외 2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2025. 7. 10 자.

19) European Commission, “Draft of the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certain AI system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draft-guidelines-implementation-transparency-obligations-certain-ai-systems-under-article-50-ai-act>>, 검색일: 2026. 7. 27.

20) Jazdia Pierce et al., “10 Takeaways: European Commission Draft Guidelines on AI Transparency under the EU AI Act”, Covington, Inside Global Tech, <<https://www.insideglobaltech.com/2026/05/12/10-takeaways-european-commission-draft-guidelines-on-ai-transparency-under-the-eu-ai-act/>>, 검색일: 2026. 7. 27.

21)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e EU AI Act’s Transparency Rules: A Practical Guide to Article 50”,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transparency-rules-article-50/>>, 검색일: 2026. 7. 28.

2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하 “집행위”)가 AI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

23) European Commission, “Draft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certain AI systems under Article 50 of Regulation (EU) 2024/1689 (the ‘AI Act’)", European Commission, 2026, p. 4.

24) European Commission, “Draft of the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certain AI system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draft-guidelines-implementation-transparency-obligations-certain-ai-systems-under-article-50-ai-act>>, 검색일: 2026. 7. 27.

에 사용된 데이터의 유형 및 출처(provenance), 큐레이션 방법론 등에 관한 정보를 하위 AI 시스템 제공자(downstream providers)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51(1)(b), Annex XII para. 2(c)), 2) 이와 별개로 제공자는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관한 충분한 상세 요약물 일반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무(51(1)(d))²⁵⁾가 부가된 것이 특징이다.

제공자는 실천강령을 활용하여 법상 의무 준수를 입증할 수 있으며(제53조 제4항, 제55조 제2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준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제56조에 따라 ‘범용 인공지능 실천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을 마련하였는데, 추진경과²⁶⁾는 (1) 2024. 7. 30. EU AI 사무국이 공식 작성 착수, (2) 2024. 11. 14. 제1차 초안(First Draft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발표,²⁷⁾ (3) 2024. 12. 19. 제2차 초안 발표, (4) 2025. 3. 11. 제3차 초안 발표,²⁸⁾ (5) 2025. 7. 10. 최종본 발표(EU AI법 제56조에 따른 공식 문서로 공개), (6) 2025. 8. 1. EU 집행위원회의 범용 AI 실천 강령 채택, (7) 2025. 8. 2. EU AI법 제5장의 범용 AI 모델 관련 규정 공식 시행(실천 강령 자율 서명 및 이행 가능)이다.

EU 범용 인공지능 실천강령은 EU 인공지능법 제53조의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와 동법 제55조의 “구조적 위험(systemic risk)²⁹⁾이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투명성(Transparency), 저작권(Copyright), 안전 및 보안(Safety and Security)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³⁰⁾ 이 중 투명성과 저작권 영역은 모든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에게 적용되지만 안전 및 보안 영역은 구조적 위험이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실천 강령 이외에도 범용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이행 기준과 관련하여 EU 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 위원회가 민간 유럽 표준화 기구에 요청하여 법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화 표준(harmonized standards)³¹⁾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을 준수할 경우 EU 인공지능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인정된다(53(4)). 표준 제정 절

25) 서흥석, 앞의 논문, 202-203면.

26) 김소담, “EU의 범용 AI 실천 강령: 시스템적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KISDI Perspectives, August 2025 No.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 3면.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의 보다 세부적인 추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European Commission, “Drawing-up a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code-practice>>, 검색일: 2026. 7. 22.

27) 이철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범용 AI 실천 강령의 첫 번째 초안 발표”, 이슈리포트 2024-35,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1-11면.

28) 손휘용,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 저작권동향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1-5면.

29) EU 인공지능법 제3조(정의) 제65호에서는 “구조적 위험이란,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높은 영향력을 가진 능력(high-impact capabilities)에 특정된 위험으로서, 그 파급력 또는 공중 보건, 안전, 공공 안보, 기본권, 또는 사회 전반에 실제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유럽 연합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EU 인공지능법 제51조(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구조적 위험이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로의 분류)에 따르면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분류되는 기준은 당시 가장 진보된 모델이거나, 훈련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25} FLOPs보다 큰 경우인데, 위원회는 동법 부속서 XIII에 따라 비록 연산량이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응하는 기능이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조적 위험이 있는 모델로 지정할 수 있다. 10^{25} FLOPs 이상의 임계치를 기준으로 구조적 위험 모델을 정의하게 되면 연산량과 위험이 단순 비례하지 않아 소규모 모델의 비선형적 위험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양지원, “EU AI Act의 범용·생성형 인공지능 규율의 한계”, 「유럽연구」, 제43권 제4호(2025), 13면.

30) 투명성, 저작권, 안전 및 보안 각각의 장(Chapter)마다 실천강령의 포괄적 목적에 대해서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촉진하고 인간 중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도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현장에 명시된 건강, 안전 및 기본권(민주주의, 법치주의, 환경 보호 포함)을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며, EU 인공지능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31) European Commission, “Harmonised Standards”, European Commission,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good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_en>, 검색일: 2026. 7. 27.

차는 2023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에서 (1) 위험 관리, (2) 데이터셋의 관리 및 품질, (3) 기록 보관, (4) 투명성, (5) 인간의 감독, (6) 정확성, (7) 견고성, (8) 사이버 보안, (9) 품질 관리, (10) 적합성 평가 등 10개 핵심 분야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³²⁾ 2025년 6월 기준 타임라인에 의하면 투명성 의무 효력 발생일인 2026. 8. 2. 직후에 부분적으로 최종 확정되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표준의 제정은 그 이후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³³⁾

2.2. 미국

2.2.1. 주 차원의 입법 현황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 차원 입법은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최근의 일리노이 정도로 파악된다.³⁴⁾

먼저 가장 선도적인 주 차원의 입법으로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1) 2024. 8. 상원을 통과한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SB1047)’³⁵⁾은 AI 개발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³⁶⁾로 인해 Open AI 등 반대의견도 직면했고³⁷⁾ 결국 2024. 9. 29.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되었다.³⁸⁾ 이후 SB 1047의 과도한 시험·강제 점검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³⁹⁾의 보완 입법으로 2025. 9. 29. ‘대형 AI 모델 개발자 투명성 및 안전 프로토콜(TFAIA: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SB 53)’이 마련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⁴⁰⁾ (2) 한편, 2024. 9. 19. 제정되어 2026. 1. 1. 시행된 AI 투명성 법(SB942: AI Transparency Act)⁴¹⁾은 미국 최초의 AI 콘텐츠 투명성 법으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월간 사용자 100만명 이상인 AI 시스템 제공자에 대해 1) 메타데이터(latent disclosure) 내장, 2) 무료 감지 도구 제공, 3) AI 생성 라벨 옵션 제공 등 의무를 규정하였다.⁴²⁾

32) European Commission, “Standardisation of the AI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act-standardisation>>, 검색일: 2026. 7. 14.

33) According to media reports on a JTC21 internal timeline, the majority of the technical standards designed to facilitate compliance with the EU AI Act are now expected to be finalized shortly after the law’s legal requirements take effect, i.e. shortly after 2 August 2026. Furthermore, this batch is expected to only partially cover the AI law’s legal requirements. Full delivery covering all requested requirements is expected much later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Standard Setting”,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standard-setting-overview/>>, 검색일: 2026. 7. 14.).

34) 그 이외에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등에서의 입법 움직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태욱 외 2인, 「미국의 AI 투명성 법제화 최신 동향: 캘리포니아 AI 입법을 중심으로」, 법률신문, 2025. 5. 6자. 참고.

35) SB-1047 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2023-2024)

36) (1) 개발비용이 1억 달러가 넘는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한 안전 테스트 의무화, (2) 안전 테스트는 제3자가 진행, (3) AI가 인명 사망이나 5억 달러(약 6700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개발사 책임, (4) 오픈소스를 파인튜닝하여 제작한 모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사도 책임 부담, (5) AI 모델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셧다운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 반영 의무 등.

37) 조이환, 「오픈AI, 캘리포니아 AI 법안 반대…주 상원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 ZDNET Korea, 2024. 8. 22자.

38) 류재민, 「AI 업계 벌벌 떨게 만든 ‘캘리포니아 SB 1047’...더 센 규제 나올까», 조선일보, 2024. 11. 21자.

39) ‘프런티어(frontier)’ AI 모델을 개발하는 대형 개발업체에 대해 안전 프로토콜(safety protocols)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안전사고(critical safety incidents) 발생 시 이를 주 정부 기관인 California Office of Emergency Services(Cal OES)에 보고해야 하며,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체계 마련을 의무화해 개발 과정에서의 위험 은폐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40)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월간동향분석”, 2025년 제12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7면.

41)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SB-942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2023-2024): Senate Bill No. 942, CHAPTER 291”,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ttps://leginfo.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942>, 검색일: 2026. 7. 28.

42) AI Watermark Cleaner, “캘리포니아 SB 942: 미국 AI 워터마크 법안 해설”, AI Watermark Cleaner, <<https://aiwatermarkcleaner.com/blog/california-sb-942-ai-watermark-law/>>, 검색일: 2026. 7. 28.

다만, 이 법률은 2025. 10. 13. 법제화(시행 2026. 8. 2. 다만 플랫폼 관련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캡처 장치 관련 의무는 2028년 1월 1일부터 각각 발효 예정⁴³⁾)된 AI 투명성법(AI Transparency Act, AB 853)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① 적용 대상 제공자(covered provider), 즉 월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넘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자(§22757.1(d)), ② 대형 온라인 플랫폼(large online platform), 즉 콘텐츠를 배포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파일공유 서비스, 대규모 메시지 서비스, 독립형 검색엔진으로서 월 이용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 플랫폼(§22757.1(h)), ③ 캡처 장치 제조자(capture device manufacturer)(§22757.1(c))에 대해 각각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⁴⁴⁾ (3) 그 이외에도 AI 시스템 개발자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에 대한 공개 의무를 규정한 ‘AI 훈련 데이터 투명성의 강화법(AB 2013)’⁴⁵⁾ 2024년 9월 주지사의 서명으로 도입된 관련 규제들로 성적(性的)인 딥페이크 규제(SB 926, SB 981), AI를 통한 개인의 디지털 복제물 사용에 대한 보호(AB 2602, AB 1836), AI 선거 악용 방지, 소비자 보호(AB 2655, AB 2839, AB 1008, AB 3030, SB 1120 등)가 있다.⁴⁶⁾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뉴욕주가 있는데, 뉴욕주 의회는 2025년 3월 법률안을 각각 하원과 상원에 제출하여 6월 13일 RAISE(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and Education) 법안⁴⁷⁾을 가결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의 반대 로비가 있었고 또한 Kathy Hochul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TFAIA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을 제안하면서 이견이 있었지만 기간 초과로 인한 거부권 행사 간주가 임박하여 의회가 2026년 1월 회기에서 법안의 변경을 약속하면서 2025. 12. 19. 원래 법안(S6953-B/A6453-B)에 서명하였다. RAISE는 캘리포니아의 TFAIA를 모델로 설계되어, 두 법안 모두 10²⁶ FLOP 임계값을 사용하되 다만 사건 보고 기간이 15일이 아닌 72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TFAIA보다 더 강화된 공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⁴⁸⁾ 뉴욕주 의회는 2026년 회기에서 법안의 변경을 공식화하였고 이에 세부 조정 규정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3번째 주 입법인 일리노이주는 최근 AI 안전 규제법(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Measures Act)을 제정(2026. 7. 6.)했다. 동 법률은 연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초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대상으로,⁴⁹⁾ 대규모 AI 개발업체는 안전 관행을 공

43)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자료(주 40), 7-8면.

44) 이미지·비디오·오디오 등 생성 또는 변형된 콘텐츠에 출처 정보(provenance data)를 포함하도록 하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업로드된 콘텐츠의 출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사진기, 스마트폰, 비디오 녹화기 등 캡처 장치(capture devices) 제조업체에 대해 콘텐츠 생성 시 출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옵션을 탑재하도록 규정함(서홍석, 앞의 논문, 197-198면).

45) SB 942와 달리 월간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이 없어 소규모 개발자도 포함되고, 구체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생성형 AI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인 및 기업이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데이터포인트 정보, 데이터셋의 구매 혹은 라이선스 획득 여부, 데이터셋에 개인 정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강태욱 외 2인, 「미국의 AI 투명성 법제화 최신 동향: 캘리포니아 AI 입법을 중심으로」, 법률신문, 2025. 5. 6자. 다만 이 선진적인 법률은 연방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후술.

4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캘리포니아 AI 규제 도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915&langNo=>>, 검색일: 2026. 7. 28.

47) 제1420조 정의 (§ 1420 Definitions), 제1421조 프런티어 모델 훈련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 요건 (§ 1421 Transparency requirements regarding frontier model training and use), 제1422조 직원의 보호, 권리 및 의무 (§ 1422 Protections, rights and obligations of employees), 제1423조 위반행위 (§ 1423 Violations), 제1424조 의무 및 책임 (§ 1424 Duties and obligations), 제1425조 적용범위 (§ 1425 Scope), 제1426조 가분조항 (§ 1426 Severability)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뉴욕주 인공지능 안전법”, 한국법제연구원, <<https://klri.re.kr/Platform/law/translated/ade1d32d-8b45-4b1c-8dcc-dc9bf64c3827>>, 검색일: 2026. 7. 23.).

48) 이지현, “AI 사고 발생하면 72시간 내 당국 신고 의무” 뉴욕주 AI 안전 법안 제정, CIO, 2025. 12. 22 자.

49) Kevin Rho, 「일리노이, 초강력 AI 안전 규제법 제정」, 미주중앙일보, 2026. 7. 7자.

개하고,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사고를 발견 후 72시간(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의 임박한 위험이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제1421조 제5항). 개발업체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안전 검토 감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⁵⁰⁾ 동 법률은 제1421조에서 ‘프런티어 모델 훈련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델 개발자는 서면형태의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마련 등 의무(5년간 자료 보존, 제1항), 중대한 피해 초래 등이 예상되는 경우 모델 배포 금지(제2항), 매년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점검 및 수정 사항 게시(제3항), 독립적인 감사 실시(제4항), 안전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관리당국에 보고(제5항), 진술보장(제6항), 대형 개발자가 아닌 경우 예외적인 준수 의무(제7항)를 각 규정한다.

2.2.2. 연방의 입법 동향

현재까지 연방 차원의 확립된 AI 법률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주 입법과는 달리 AI 활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활용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방은 2023년 10월의 ‘인공지능 행정명령’ 등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으나 대통령 교체 등에 따라 정책은 유동적이었고,⁵¹⁾ 아직까지 AI 규제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미국 연방 태도를 보면 2025년 4월 발의된 COPIED Act(Content Origin Protection and Integrity from Edited and Deepfaked Media Act; 편집 및 딥페이크 미디어로부터의 콘텐츠 출처 보호 및 무결성에 관한 법안, S.1396)⁵²⁾는 2025년 4월 미국 상원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으로, AI 생성물로부터 저작권자와 언론인,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대한 입법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6. 3. (1) 아동 보호, (2) AI 인프라·전력, (3) 저작권·디지털 복제물, (4) 표현의 자유, (5) 혁신 촉진, (6) AI 인력 양성, (7) AI 규제의 연방 선점이라는 7개 영역에 대한 입법 권고안을 담은 “AI 국가 정책”(AI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⁵³⁾을 발표했다. (5) ‘혁신 촉진 및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Enabling Innovation and Ensuring American AI Dominance)’에서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연방차원에서 AI 규제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규제기관이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AI 활용을 지원하며,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7)에서는 아동 보호, 사기 방지 등 분야에서는 AI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되, AI의 개발이나 그 활용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⁵⁴⁾ 그리고 최근인 2026년 6월 4일, 미 하원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269페이지짜리 AI 법안(GAAIA :

50) Brian Weckerly & Jim Niedelman, “Key to Illinois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s could be independent safety reviews”, FOX 2 now, <<https://fox2now.com/news/illinois/key-to-illinois-artificial-intelligence-regulations-could-be-independent-safety-reviews/>>, 검색일: 2026. 7. 13.

51) 이경복·박태현, “AI-사이버 우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SW중심사회, Vol.14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6, 43면 이하; 이근우 외 4인, 「미국 AI 국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률신문, 2026. 4. 23자.

52) U.S. Congress, “S.1396 - Content Origin Protection and Integrity from Edited and Deepfaked Media Act of 2025”,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396/text>>, 검색일: 2026. 7. 28.

53) The White House,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3/03.20.26-National-Policy-Framework-for-Artificial-Intelligence-Legislative-Recommendations.pdf>>, 검색일: 2026. 7. 27.

54) 연방 우선권 규정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Mina Narayanan et al., “Unpacking the White Hous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I”, CSET, Georgetown University, <<https://cset.georgetown.edu/article/unpacking-the-white-house-national-policy-framework-for-ai/>>, 검색일: 2026. 7. 27.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f 2026)⁵⁵⁾ 초안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앞선 AI 국가 정책의 (7)번 항목과 관련하여 주(州)가 AI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3년간 막는 선점 조항이다. 즉, 모델을 만드는 방식은 연방이 정하고 그 모델을 쓰는 방식은 주가 정한다는 것으로서, 그 선 위에 캘리포니아의 한 법(AB 2013)이 정확히 표적으로 적혀 있는데 연방 법안은 이것을 ‘개발 단계 규제’로 분류해 3년간 동결 대상으로 명시했다.⁵⁶⁾⁵⁷⁾ 주가 “AI 모델의 개발(development)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도록 3년간, 즉 2029년 말까지 막는 것(다만, 모델이 시장에 나온 뒤의 영역, 곧 배포·제공·사용을 규제하는 주 법은 그대로 유지)으로, 그 대신 연방법 차원에서 연매출 5억 달러를 넘으면서 프런티어 모델(10²⁶ 이상의 연산으로 학습한 모델)을 만드는 소수의 개발사에 대해 NIST 산하 CAISI가 인증한 독립검증기관(IVO)을 고용해 반기마다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제출하고, 중대 안전 사고는 15일 이내에, 임박한 위험은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하루 최대 1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p.29 Sec. 111.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⁵⁸⁾

2.3. 일본

일본은 그동안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법적 구속력 없는 AI 가이드라인(「AI事業者ガイドライン」, 「人間中心のAI社会原則」)을 배포하여 기업의 자율 규제를 장려해 오다가, 2025. 6. 4. 최초의 AI 기본법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AI 추진법)을 공포⁵⁹⁾하였다(2025. 9. 1. 시행). 동 법률은 총 4개의 장, 제2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⁶⁰⁾ 그동안의 자율 규제 장려의 연장선상에서 동법 역시 AI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진흥의 성격을 이어받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⁶¹⁾ 일본의 기업 등은 법령 준수 의식이 높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우 연구개발 등을 주저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법령에 의한 규제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한 대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⁶²⁾ 일본 AI 개발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법안에서는 ‘촉진’의 측면으로 강하게 뒷받침되었고

55) U.S. House of Representatives,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f 2026 (Discussion Draft)”, H. R. 11, 119th Congress, 2D Session”, Politico, <<https://www.politico.com/2026/06/04/obernolte-trahan-ai-draft>>, 검색일: 2026. 7. 28. 이에 대한 7면 요약 자료로는 Office of Rep. Lori Trahan, “Section-by-Section Summary: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Discussion Draft)”,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s://trahan.house.gov/uploadedfiles/gaaia_discussion_draft_section-by-section.pdf>, 검색일: 2026. 7. 28.

56) Allison Mollenkamp, “Bipartisan AI draft proposes three-year preemption of state laws”, Roll Call, <<https://rollcall.com/2026/06/04/bipartisan-ai-draft-proposes-three-year-preemption-of-state-laws/>>, 검색일: 2026. 7. 27.; Justin Hendrix, “Unpacking the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f 2026”, Tech Policy Press, <<https://www.techpolicy.press/unpacking-the-great-american-artificial-intelligence-act-of-2026/>>, 검색일: 2026. 7. 27.

57) 페블러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팀, “연방이 캘리포니아 AI 학습 데이터 공개법을 3년간 멈춘다”, Pebblous, <<https://blog.pebbulous.ai/blog/great-american-ai-act-preemption/ko/>>, 검색일: 2026. 7. 28.

58) 동 법안의 4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Justine Gluck, “Frontier AI Goes Federal: How the Great American AI Act Compares to State Laws”, Future of Privacy Forum, <<https://fpf.org/blog/frontier-ai-goes-federal-how-the-great-american-ai-act-compares-to-state-laws/>>, 검색일: 2026. 7. 23.

59) e-GOV法令検索,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七年法律第五十三号)”, e-GOV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3>>, 검색일: 2026. 7. 27. 내각이 2025년 2월 28일 중의원에 제출한 동법은 4월 24일 중의원을 통과한 후 5월 28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공포됨.

60) 内閣府,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AI法案)概要”, 内閣府, <https://www.cao.go.jp/houan/pdf/217/217gaiyou_2.pdf>, 검색일: 2026. 7. 27.

61)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2025. 6. 4.)”,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2025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3면.

62) AI 戦略会議・AI 制度研究会, “中間とりまとめ”, 2025년 2월 4일, 内閣府, 2025. 10면, 14면.

이는 EU AI법이 위험 관리에 비교적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⁶³⁾ 투명성(透明性)이라는 표현은 제3조(기본이념) 제4항에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은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에의 이용, 개인정보의 유출, 저작권의 침해 및 기타 국민생활의 평온 및 국민의 권리이익이 해로운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 적정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타 필요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⁶⁴⁾

AI법 시행에 의해 (1) AI 전략 본부의 발족, (2) AI 기본 계획 수립, (3) 조사 연구 등에 근거한 시책 마련, (4) 가이드라인 공식화(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지침, 제13조),⁶⁵⁾ (5) 체제 정비 지원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⁶⁶⁾ 「AI사업자가이드라인」⁶⁷⁾에서는 AI가 초래하는 사회적 리스크의 방지와 더불어 AI의 혁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비구속적인 연성 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을 밝히면서(第2頁), 각 주체별 공통지침과 주체별 중요 준수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⁶⁸⁾

2.4. 중국

중국은 2017년 국가 차원의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정책과 법제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2020년 후반부터 규제를 강조하다가 2022년 말 중국 경제의 침체와 미중패권 기술경쟁으로 인해 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⁶⁹⁾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2023. 7. 13.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성격을 띤 「생성형 AI 잠정 관리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⁷⁰⁾을 공표하였다. 즉, 특정 분야에서 먼저 입법을 모색하고, 특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결한 후, 여건이 무르익고 시기가 적절한 때 통일된 AI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⁷¹⁾ 그리고 위 관리방법 제4조 (5)에서 투명성(透明度)에 대해 “(v) 서비스 유형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⁷²⁾ 그 이외에 제12조에서 콘텐츠 표기 의무, 제7조 및 제8조에서 데이터 훈련-라벨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⁷³⁾

한편, 중국 국무원은 최근인 2026. 5. 11. 입법 사업 계획(国务院2026年度立法工作计划)을

63) 이정아, “일본 AI 정책·전략의 새로운 출발과 전환점, 「AI 추진법」-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은 무엇인가? -”, THE AI REPORT 2025-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1면.

64)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は、不正な目的又は不適切な方法で行われた場合には、犯罪への利用、個人情報漏えい、著作権の侵害その他の国民生活の平穏及び国民の権利利益が害される事態を助長するおそれがあることに鑑み、その適正な実施を図るため、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過程の透明性の確保その他の必要な施策が講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65) 経済産業省, “AI事業者ガイドライン検討会”, 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ai_shakai_jisso/index.html>, 검색일: 2026. 7. 27.

66) 光股知裕, “日本におけるAI新法とは? 法案の内容を解説【法案全文DLあり】”, Prospire Lawoffice, <https://prospire-law.com/articles_internetit/25041001/>, 검색일: 2026. 7. 27.

67) 総務省·経済産業省, “AI事業者ガイドライン(第1.2版)”, 経済産業省, 2026, 1-41면.

68) 제2부 공통지침과 주체별 중요 사항(개발자, 제공자, 이용자)은 総務省·経済産業省, 앞의 자료, 25면 도표 참고.

69) 이중희,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에 대한 분석: 배경과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1면.

70)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https://www.cac.gov.cn/2023-07/13/c_1690898327029107.htm>, 검색일: 2026. 4. 24.

71) 高娟, “我国提出加快人工智能健康发展立法专家建议”, 中国工业报社, 2026. 7. 3자.

72) 基于服务类型特点, 采取有效措施, 提升生成式人工智能服务的透明度, 提高生成内容的准确性和可靠性.

7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별 ICT 시장동향: 중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 10면.

발표하며 “AI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입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같은 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한 2026년 입법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AI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된 입법 과제를 관련 부처에서 연구 및 초안을 작성하고, 적절한 시기에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⁷⁴⁾ 즉, 2026. 5.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입법 작업 계획에 “AI 거버넌스 개선과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입법 가속화” 계획이 정식으로 명시된 것으로서,⁷⁵⁾ ‘혁신 장려와 발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는 부분이 입법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한다.⁷⁶⁾

3.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의 규제 형식 전환 필요성 – 연성 규제의 방향

3.1. 인공지능의 특징과 인공지능 규제 정립에서의 딜레마

AI는 아직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⁷⁷⁾ ‘인공’·‘지능’과 같이 인간의 사고 프로세스와 같은 형태로 동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상에서 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등으로 설명된다.⁷⁸⁾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 및 활용 양상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⁷⁹⁾ 등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규제 내용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의 유용성과 그 발전 촉진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인간의 통제 범위가 불명확하여 어느 영역까지 입법으로 규제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2022년 말경 챗GPT 출시로 인해 촉발되기는 하였으나 1950년경부터 인공지능이 논의되었는데,⁸⁰⁾ 2024년에서야 EU가 최초 입법을 하였고 국가 차원의 포괄적 규제 입법은 2025년 우리의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것⁸¹⁾은 인공지능 규제 입법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인공지능 분야 기술 발전의 필요성과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팽팽한 긴장 관계로 인해 입법의 필요성에 비해 세계 각국의 입법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⁸²⁾ 미국은 아직까지 일부 주 법률 이외에 연방차원의 명확한 법제가 없고, 영국의 경우 데이터 보호, 경쟁 분야, 인권 분야 등 개별 분야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⁸³⁾ “가까운 시일 내에 인공지능 활용 규제에 특화된 법제화 시도는 없을 것”임을 공언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해당 영역을 규율하던 기존 규제기관들이 계속하여 규제를 담당할 것임을 밝혔다.⁸⁴⁾ 그리고 일본도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 맡겨 오다가 최근

74) 高娟, 앞의 기사(주 71).

75) 신경원, 「中, 최초로 포괄적 ‘AI 기본법’ 제정 공식화… 기술 패권 속 ‘안전판’ 다진다」, 글로벌이코노믹, 2026. 5. 18자.

76) 高娟, 앞의 기사(주 71).

77) 김태형, “AI위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소비자정책동향, 제140호, 한국소비자원, 2024, 12면 이하 참고.

78) 総務省・経済産業省, 앞의 자료, 9면.

79) 인공지능은 단일 기술이라기보다는 계속된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특허로 제품이나 시스템을 완성하기 어렵고 특허 하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윤태성, 「AI 특허전략」, 박영사, 2026, 213면.

80) 조민호, “인공지능의 역사, 분류 그리고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2호(2021), 308면 이하.

81) 김현경,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2025), 81면.

82) 류재민, 앞의 기사(주 38).

83) UK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National AI Strategy”, Command Paper 525, HM Government, 2021, pp. 51-52.

84) Daria Mosolova, 「UK will refrain from regulating AI ‘in the short term」, Financial Times, 2023. 11. 17자.

에서야 일반법을 마련하였는데, 법 규정도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의미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입법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나아가 서서히 그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내용도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주요 특징만 간략히 살펴보면 최초의 입법인 EU는 규제 중심의 AI법을 마련하였으나 이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⁸⁵⁾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AI법 핵심 조항의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⁸⁶⁾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EU에 비해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무게 중심을 둔 입법을 마련하면서 가이드라인 등 자율적 의무 준수를 장려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주 차원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으나, 연방 차원에서 이와 달리 활용 촉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적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에 이어 최초의 국내적 포괄 입법으로 평가되는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 및 활용 촉진을 동시에 추구한 입법으로 설명되는데,⁸⁷⁾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장점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오히려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쪽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문제도 있다.⁸⁸⁾

3.2. 인공지능 규제 법제의 방향성

인공지능 법제에 대해서는 (1) 지금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영국과 같이 다른 국가들의 입법 동향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것인지, (2) 입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선택 문제가 있다. (1)과 (2)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앞서 본 인공지능 규제의 특징을 감안하면 (2)의 영역 내에 (1)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타당할 수 있다. 즉, (1) 입법 유보가 아닌 입법 추진의 관점에서 (2) 입법 내용 속에 입법 유보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입법을 하는 상황에서 입법 유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얼핏 모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만 법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 법제 대응의 방법으로 법령에 의한 (경성)대응과 가이드라인에 의한 (연성)대응이 있는데, 전자는 법적 확실성 및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나, 최신의 기술동향에 대한 대응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그 반대의 장단점이 있다.⁸⁹⁾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범용 기술인 동시에 급변하는 신기술이고 따라서 그 위험 역시 활용 맥락에 따라

85) Henrique Schneider, "The AI Act: The EU's serial digital overregulation", GIS Reports, <<https://www.gisreportsonline.com/r/ai-act-eu-regulation-innovation/>>, 작성일: 2024. 10. 10.; Nuno Sousa e Silva,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ritical Overview",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937150>, 작성일: 2024. 7. 30.

86) EU,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s (EU) 2016/679, (EU) 2018/1724, (EU) 2018/1725, (EU) 2023/2854 and Directives 2002/58/EC, (EU) 2022/2555 and (EU) 2022/2557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digital legislative framework,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2018/1807, (EU) 2019/1150, (EU) 2022/868, and Directive (EU) 2019/1024 (Digital Omnibus)",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5PC0837>>, 검색일: 2026. 4. 28. EU에서의 AI 규제에 대한 불만과 그 시행 연기 논의에 대해서는 김현경·김민주, "EU 인공지능법 및 위원회 지침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비교·분석 및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26, 161면 이하 참고.

87)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 101] 세계 최초 전면 시행 앞둔 「AI기본법」, 핵심 쟁점은?", 이글루코퍼레이션, <<https://www.igloo.co.kr/security-information/%EB%B3%B4%EC%95%88-101-%EC%84%B8%EA%B3%84-%EC%B5%9C%EC%B4%88-%EC%A0%84%EB%A9%B4-%EC%8B%9C%ED%96%89-%EC%95%9E%EB%91%94-%E3%80%8Cai%EA%B8%B0%EB%B3%B8%EB%B2%95%E3%80%8D-%ED%95%B5%EC%8B%AC-%EC%9F%81/>>>, 검색일: 2026. 4. 28.

88) 정찬모,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2025), 95-96면.

89) AI 戦略会議・AI 制度研究会, 앞의 자료, 9-10면.

그리고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⁹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유연할 필요가 있고 연성 규범에 의한 비법적 규제가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⁹¹⁾ 영국의 유보적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 및 EU의 비구속력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 및 활용 촉진, 미국 연방 차원의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우선적 지위 및 민간 자율 규제 권고 의견 표명 등도 모두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한다. 우리도 2023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일반)’를 발간하였고(2024 개정), 그 이외에 개별 분야에 대해 공공사회, 의료, 자율주행(이상 2023), 그리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스마트 치안, 채용(이상 2024) 등 분야별 안내서가 발간되는 등⁹²⁾ 연성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나, 인공지능기본법에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태도여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3.3. 현행 투명성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3.3.1.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규정의 문제점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유형별로 고지 의무(제31조 제1항), 표시 의무(동조 제2항), 딥페이크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표시 의무와 그 예외(동조 제3항)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세부적인 고지 또는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⁹³⁾ 투명성 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앞선 주요국의 입법 동향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현행법이 지금과 같은 정도의 입법을 한 것은 충분히 그 노고를 인정할 만하다.⁹⁴⁾ 하지만 예상가능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점,⁹⁵⁾ 배포자 개념의 도입필요성,⁹⁶⁾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의 중복 적용 문제,⁹⁷⁾ 투명성 의무 기준의 불명확성,⁹⁸⁾ AI워싱의 문제⁹⁹⁾ 등 다양한 비판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투명성 의무 입법의 어려움과 현행법이 투명성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제43조 제1항 제1호) 또는 사실조사 등(제31조 제2항 관련, 제40조 제1항)으로 제재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지적의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즉, 지금의 입법 규정과 개선 의견들을 보면, 현행 규정의 투명성 의무 규정을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방향, 즉 현행 규정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들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전형적인 입법이 아닌 인공지능 규제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이와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개정 의견들은 현행 규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라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 동 규정에 대한 지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개정의견들

90) 総務省・経済産業省, 앞의 자료, 9면(인공지능의 종류와 활용은 다방면에 걸쳐 있어 향후 AI 기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예측하기 곤란).

91) 같은 취지로 이상용, “인공지능 규제의 두 가지 접근법 - 맥락 기반 규제와 능력 기반 규제”, 『사법』, 제70호(2024), 20면.

9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뢰성 개발 안내서”,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41>>, 검색일: 2026. 7. 14.

93) 이에 대한 상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6, 1-28면 참고.

94) 참고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에 대한 최초 입법은 2023. 12. 28. 신설(2024. 1. 29.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95) 정준화, 앞의 자료, 2-3면.

96) 이성엽,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법률신문, 2026. 2. 4자.

97) 류시원, 「AI 산출물 표시 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79면.

98) 강명수,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AI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둔 개정의 필요성 중심으로 -”, 『법제』, 제713호(2026), 35면.

99) 김태형·김재영,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주요내용과 소비자정책의 과제”, 소비자정책동향, 제145호, 한국소비자원, 2025, 9-10면.

이 일괄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내용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그 의견들만 반영되면 의문의 여지 없는 투명성 기준 정립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그 분류기준과 마찬가지로 투명성 의무도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그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입법에 의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¹⁰⁰⁾ 가사 입법에 의해 지금의 상황에 맞는 투명성 의무를 명확히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으로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¹⁰¹⁾ 또한 향후 예상하지 못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기본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행정규칙 등으로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나,¹⁰²⁾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충분한 조치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예측 및 통제 가능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입법 동향이 어느 정도 정립되기까지는 가급적 유연한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¹⁰³⁾

3.3.2. 투명성 의무에 관한 연성 대응으로서 개정 입법안

인공지능 규제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의무(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명성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¹⁰⁴⁾에 대해서는 연성 대응 중심의 입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기준의 모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입법을 제안해 본다. 즉, (1) 법률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기준만을 두고, (2)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3) 다만 자율규제에 따른 피해자 보호상의 공백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의 대처는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과 관련하여 일본 및 중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¹⁰⁵⁾ 투명성 의무가 인공지능사업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적인 사항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2)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투명성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입법 태도를 참고하여 가급적 분야별 자율 규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¹⁰⁶⁾은 제1항의 투명성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세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각 산업 분야별(산업 분야에 대한 분류 기준은

100) 김민주·김현경,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U AI법 투명성 의무 조항 분석을 중심으로 -”, 『전진상사법률연구』, 제110호(2025), 99면(인공지능 모델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

101) 김병필, 「인공지능 투명성 딜레마」, 중앙일보, 2025. 2. 24자.

102)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2항(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103) 유사한 취지로 김민주·김현경, 앞의 논문, 100면(데이터 보호와 달리, 인공지능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영역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적 특성상 그 잠재적 편익과 위험을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따라서 법률을 통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104) Transparency remains one of the defining themes of modern AI regulation. Richart Ruddle,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Measures Act”, Captain Compliance, <<https://captaincompliance.com/education/artificial-intelligence-safety-measures-act/>>, 검색일: 2026. 7. 13.

105) 이와 관련하여 정의규정에 ‘투명성 의무’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06) 인공지능기본법 제7조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행규칙 등에 위임)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별 세부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관리·통제의 곤란성, 분야별 자율규제 권장 및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타당성 등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¹⁰⁷⁾ (3) 마지막으로 분야별 자율 규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율 규제만으로 투명성 의무 준수를 판단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규제 기준을 투명성 의무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되, 다만 법원의 판단 재량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원은 위 규정에 따른 분야별 자율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투명성 의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EU의 입법 동향 참고).

이러한 개정안은 투명성 기준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계는 있지만, 이는 투명성 의무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인 점, 이에 비해 동 개정안에 의하면 연성규범으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분야별 자율 규제를 촉진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자율 규제 준종의 토대와 더불어 개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⁸⁾

4.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에 대한 규제의 방향 – 의무규정에서 면책규정으로

4.1. 투명성 의무에 관한 연성 대응의 한계와 보완 방향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의 연성 대응은 분야별 자율 규제를 적극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그 활용 촉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 방식에 의할 때, 해당 분야의 자율 규제가 없거나 적용되는 자율 규제(존부 또는 내용)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독자적인 투명성 의무 준수를 원하는 경우 등의 경우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공백에 대해 현행법상 일반적인 법리(불법행위책임 등)로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예측가능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서 연성 대응으로의 전환은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는데, 여기서 살펴볼 투명성 의무 규제 방식은 달리 참고 입법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규제상의 딜레마 관점에서 유사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작권법상 OSP 책임 규정을 참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까지의 인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많은 유용성을 가져다준다. 이 기술 자체는 중립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블랙박스 현상으로 인한 실행 과정의 모호성 및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그 이용자에 대해 이용과정이나 결과물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법학에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인과관계 법리를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책임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는 법적 책임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투명성 의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 전개를 보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투명성 의무를 명칭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의 관점, 즉 이를 위반하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책임요건으로 보는 듯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법 태도가 수긍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며 지금은 이를 개발하고 활용을 촉진할 필요

107) 참고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제3조 제4항, 제8조 제1항 제7호 등도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08) 2026. 3. 미국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3) 항목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 준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그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유보하고 있다.

성이 높은 상황임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인공지능 활용에서 신뢰성 담보가 중요하고 투명성 기준을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방향성이 반드시 규제(의무)중심일 필요가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 판단된다.¹⁰⁹⁾ 사회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에 나아가,¹¹⁰⁾ 투명성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이유와 그 필요성 측면에서도 이는 인공지능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공지능 활용을 제대로 알리고 그에 따른 신뢰성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성 보장은 의무의 측면이 아니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준수하면 면책이 되어 안정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도 구성가능하고 그러한 방향이 인공지능 활용 규제와 더불어 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우리법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투명성 기준을 인공지능사업자가 법적 책임의 범위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지표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는 것이다.¹¹¹⁾

4.2. 저작권법상 OSP 책임 법리의 특징과 시사점

OSP는 온라인상에서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배포,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많은 편익을 얻는다. 문제는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상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이용 우려가 크다는 것인데, 오프라인을 전제로 한다면 직접 침해자가 아닌 만남의 장소 제공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만남의 장소 제공(OSP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역적 또는 이용자 수의 제한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 인지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고,¹¹²⁾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OSP가 책임져야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¹³⁾ 이에 우리 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후자의 관점에서 OSP에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¹¹⁴⁾ 책

109)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서 투명성 의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반해 규제 중심의 EU AI에 대해서는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AI 활용에 따른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혁신을 제거하고 AI 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천명하고 있는 점(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 Unveils National AI Legislative Framework",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6/03/president-donald-j-trump-unveils-national-ai-legislative-framework/>>, 작성일: 2026. 3. 20.), 일본과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투명성 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책 방향의 중심을 AI 활용 촉진과 발전에 두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강명수, 앞의 논문, 24-27면)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10)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02조는 OSP에 대한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모니터링 등 추가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달리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제104조에 대해서는 비록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52,110(병합) 전원재판부), 위헌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김병일, "저작권법 제104조등 위헌소원 결정(2009헌바56)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2011), 96-97면 참고).

111) 김윤명,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임법적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24, 15면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투명성을 포함한 인공지능 분야의 인권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에 대한 보호 기준이 마련"이라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22, 3면).

112) 김용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23권 제4호(2012), 214-216면 참고.

113) 김현경,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조항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1집(2010), 311-312면;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개정 저작권법 중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2012), 127면; Arnold P. Lutzker, "Primer on the Digital Millennium",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99, pp. 13-14.

임 부과와 타당성을 긍정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OSP가 면책되는지의 불명확성이 남게 되었다.¹¹⁵⁾ 권리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OSP에게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한 당사자를 보호·장려하기보다 그 개발주체를 옥죄는 것으로서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¹¹⁶⁾ 이에 우리 법은 미국의 DMCA(1998년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규제 방식(의무규정)이 아닌 OSP에 대한 책임면제(면책규정)의 모습으로 입법하여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비록 이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있으나¹¹⁷⁾ OSP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면책기준을 명확히 하여 OSP에 대한 방향이 규제가 아닌 면제(safe harbor) 중심으로서 온라인서비스 개발 및 제공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¹¹⁸⁾

한편,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과 OSP 서비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고, 인공지능 서비스 유형에 따른 OSP 책임 적용¹¹⁹⁾ 이외에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에 대한 OSP 책임 법리 적용 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존에 없던 새롭고 유용한 신기술이라는 점,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데 반해 그 활용에 따른 피해의 규모나 정도가 커서(또는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서) 일정 부분 규제의 필요성도 있는 점, 규제를 어느 정도로 할지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강화는 자칫 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¹²⁰⁾ 직접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¹²¹⁾ 해당 기술(서비스)을 통해 이익을 얻고 또한 이에 대한 통제 능력과 수단이 있는 주체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¹²²⁾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를 저작권법 제102조와 같이 인공지능 및 사업자의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대상에 맞는 면책규정 형태로의 입법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입법형태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든 면책규정이든 인공지능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투명성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규정은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 114) 소리바다 1, 3, 5 사건에 대한 간략 정리로는 양혜원, “OSP의 책임과 소리바다 사건”,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 Report 제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1-10면.
- 115) 소리바다 5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참고. 동 결정에 대한 비판적 지적으로 정상조·박준석, “OSP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4권 제1호(2008), 25면 이하 및 김윤명, 앞의 자료, 20면.
- 116) 소리바다 사건 판례의 태도가 새로운 형태의 기술발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박선영, “OSP의 방조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리바다사건(2005다11626)을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6권 제1호(2007), 214면.
- 117) 김현경, 앞의 논문(주 113), 321-322면; 문일환, 앞의 논문, 161면; 송선미·유혜정, “OSP의 책임 제한에 관한 입법 동향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20-21면 등.
- 118) 2003년 신설된 OSP 책임규정의 신설취지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라고 한다(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62238, 2003. 4., 제안자 문화관광위원회).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OSP의 책임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및 미국 DMCA의 입법 취지가 OSP 책임 제한에 의한 인터넷 기반 플랫폼 발전에 있다는 점은 송선미·유혜정, 앞의 보고서, 3-4면 및 61-62면 각 참고.
- 119) 김윤명, 앞의 자료, 17면 이하 참고.
- 120) 김병일, 앞의 논문, 97면(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배려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 한편, OSP 책임확대론과 책임축소론의 대립에 대해서는 문일환, 앞의 논문, 140면.
- 121) OSP와 달리 AI 사업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침해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침해 발생을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침해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122) 문일환, 앞의 논문, 127면; 송선미·유혜정, 앞의 보고서, 81면. 한편, 미국 DMCA의 OSP 책임제한 규정은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소유자 간의 합의된 입법적 타협안(The legislative compromise worked out between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and content owners)이라는 점은 Jane C. Ginsburg, “User-Generated Content Sites and Section 512 of the US Copyright Act”, Edit. by Irini A. Stamatoudi, Copyright Enforcement and the Internet,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p. 185.

의무규정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입법의 재량성 확대이다. 현행과 같은 의무규정의 경우 그 위반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확성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반해, 면책규정의 경우 그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투명성 의무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 참고).¹²³⁾ 둘째, 인공지능 규제의 연성 대응과 정합된다. 인공지능 법제는 연성 대응이 적절할 수 있는데, 투명성을 의무 규정으로 하면 획일적·일률적 규제가 되어 이에 맞지 않고 이와 달리 면책규정으로 하면 최소한의 면책요건만 법에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면책 또는 책임 여부는 달리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어 연성 대응에 부합한다. 셋째, 유형별 대처 가능성 증대이다. 의무규정의 경우 유형별로 투명성 기준을 입법하기가 쉽지 않은데 반해, 면책규정의 경우 OSP 규정과 같이 유형별로 구체화된 면책규정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¹²⁴⁾ 그리고 면책규정에 분야별 자율규제 기준(가이드라인 등)의 적극적 활용도 가능하며, 자율규제 권장 및 촉진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해관계 조율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사업자의 상대방은 주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지만 이는 결코 인공지능기술의 유용성이나 그 활용 필요성을 부정 또는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¹²⁵⁾ 어찌 보면 양측의 주장은 대립하는 것이면서도 공통적이기도 하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투명성을 의무관점에서 바라보아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그 책임 부과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사업자측의 거부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러한 요구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역행하는 부당한 요구라는 편견을 초래하기도 한다.¹²⁶⁾ 만약 면책규정의 형태로 입법이 된다면 이 부분의 대립도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투명성 요건은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보 이용 과정에서의 혼동과 오인 방지 및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¹²⁷⁾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OSP 책임 법제와 같이 면책요건을 두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신뢰성 침해 문제는 투명성 면책요건의 구체화를 통해 대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 소결 – 인공지능기본법의 투명성 의무 규정 개정안

현행 인공지능 투명성 규정을 면책규정 형태로 전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투명성 법제에 대한 주류적 논의와는 다른 방향의 의견으로서, 참

123)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31 전원재판부 결정(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 참고.

124) 2003년 신설된 저작권법상 OSP 면책 규정(구 저작권법 제77조)과 관련하여 법원은 동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 불법행위에서의 방조책임 법리로 판단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면책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미국 DMCA 등과 같이 유형화·세분화된 면책요건 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견해(김현경, 앞의 논문(주 113), 321면)가 있는데, 2011년 개정법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투명성 의무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구체화된 면책요건을 둔다면 그 실효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5) 참고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도,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우리 단체들은 무조건 강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진흥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어야”, 언론개혁시민연대, <<https://www.mediareform.co.kr/512193>>, 검색일: 2026. 7. 27.

126) 신주백, 「AI 기본법 앞둔 산업계의 속내…“투명성은 필요하지만, 현실은 너무 빠르다”」, KMJ, 2025. 12. 26자.

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앞의 인공지능가이드라인, 1면.

고 입법례나 선행 연구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여기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일응의 개정안 제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 규정을 최대한 활용(특히 면책요건과 관련하여)하는 것을 전제로 (1) 연성 규정의 형태로 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두고 세부 기준은 관련 분야의 자율 규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2) 투명성 규정을 의무규정이 아닌 면책규정의 형태로 전환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 여부나 세부적인 내용 구성은 후속 연구와 검토 등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논의의 출발점 또는 참고의견으로 개정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¹²⁸⁾

제31조(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제한)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호의 분류에 따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투명성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것

나. 고지의 방법 -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 규정 반영

2.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나. 표시의 방법 -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호 규정 반영

3.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재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가.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나. 위 가목과 관련하여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투명성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세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자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투명성 의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인류 문명사에 한 분기점이 될 인공지능 기술은 현실 세계를 다차원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놀라운 기술적 우수성은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한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지능 탄생에 대한 두려움도 초래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엄청난 편리성을 가져다주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발전할 것인지, 우리 인간이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 무엇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멈춤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도 아이러니만큼이나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법제를 어떤 방향으로 마련하고 개선해 나갈지는 결국 정의(justice)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2025년 EU에 이어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

128) 그 이외에 유형별 면책의 최소 요건만 법에서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방법, 분야별 자율규제 기준을 면책요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법에서 이를 직접 명시하거나 시행령 등에서 명시 또는 시행령에 직접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포괄적 규제를 마련하였고, 비록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선도적인 입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개정을 전제로 한 불완전한 입법이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명성 의무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은 투명성 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정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로 논의되고 있다. 즉, 투명성 의무를 인공지능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임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보면 세부적인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등 연성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요국의 동향은 우리 입법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고 또한 지금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우리법도 연성 규범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투명성의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은 모두 의무의 관점에서 그 구체적 기준 마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명성 기준이 책임 부여의 측면이 아닌 인공지능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인공지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무규정이 아닌 면책규정의 형태가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OSP 책임제한 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 법제는 연성 규제가 바람직하고, 또한 투명성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인 반면 안정적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면책규정 형식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검토한 다음,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의무 규정을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공지능 사업자는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규정 형태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성 규제 및 면책규정으로의 전환은 지금의 인공지능기본법 체계를 큰 폭으로 수정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지, 그러한 개정에 어느 정도의 검토와 시간이 필요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의 다양한 개선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고 또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국내 및 동양)

류시원, 「AI 산출물 표시 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

윤태성, 「AI 특허전략」, 박영사, 2026.

단행본(서양)

Jane C. Ginsburg, “User-Generated Content Sites and Section 512 of the US Copyright Act”, Edit. by Irini A. Stamatoudi, Copyright Enforcement and the Internet,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학술지(국내 및 동양)

강명수,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AI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둔 개정의 필요성 중심으로 -”, 「법제」, 제713호(2026).

김민주·김현경,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U AI법 투명성 의무 조항 분석을 중심으로 -”, 「선진상법률연구」, 제110호(2025).

김병일, “저작권법 제104조등 위헌소원 결정(2009헌바56)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2011).

김용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 2011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23권 제4호(2012).

김현경,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조항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1집(2010).

김현경,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KISO 저널」, 제58호(2025).

김현경,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2025).

문일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개정 저작권법 중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2호(2012).

박선영, “OSP의 방조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리바다사건(2005다11626)을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6권 제1호(2007).

서흥석, “AI 콘텐츠는 어디에서 왔는가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프로비넌스(provenance)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법제」, 제713호(2026).

양지원, “EU AI Act의 범용·생성형 인공지능 규율의 한계”, 「유럽연구」, 제43권 제4호(2025).

이상용, “인공지능 규제의 두 가지 접근법 - 맥락 기반 규제와 능력 기반 규제”, 「사법」, 제70호(2024).

정상조·박준석, “OSP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4권 제1호(2008).

정찬모,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2025).

조민호, “인공지능의 역사, 분류 그리고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2호(2021).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52·11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31 결정.

신문기사

- 강태욱 외 2인, 「미국의 AI 투명성 법제화 최신 동향: 캘리포니아 AI 입법을 중심으로」, 법률신문, 2025. 5. 6자.
- 강태욱 외 2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2025. 7. 10자.
- 김병필, 「인공지능 투명성 딜레마」, 중앙일보, 2025. 2. 24자.
- 류재민, 「AI 업계 벌벌 떨게 만든 ‘캘리포니아 SB 1047’...더 센 규제 나올까」, 조선일보, 2024. 11. 21자.
- 신경원, 「中, 최초로 포괄적 ‘AI 기본법’ 제정 공식화...기술 패권 속 ‘안전판’ 다진다」, 글로벌이코노믹, 2026. 5. 18자.
- 신주백, 「AI 기본법 앞둔 산업계의 속내...“투명성은 필요하지만, 현실은 너무 빠르다”」, KMJ, 2025. 12. 26자.
- 이근우 외 4인, 「미국 AI 국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률신문, 2026. 4. 23자.
- 이성엽,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법률신문, 2026. 2. 4자.
- 이지현, 「“AI 사고 발생하면 72시간 내 당국 신고 의무” 뉴욕주 AI 안전 법안 제정」, CIO, 2025. 12. 22자.
- 조이환, 「오픈AI, 캘리포니아 AI 법안 반대...주 상원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 ZDNET Korea, 2024. 8. 22자.
- Kevin Rho, 「일리노이, 초강력 AI 안전 규제법 제정」, 미주중앙일보, 2026. 7. 7자.
- 高娟, 「我国提出加快人工智能健康发展立法专家建议」, 中国工业报社, 2026. 7. 3자.
- Daria Mosolova, 「UK will refrain from regulating AI ‘in the short term’」, Financial Times, 2023. 11. 17자.

인터넷 자료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미국 캘리포니아 AI 규제 도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915&langNo=>>, 검색일: 2026. 7. 28.
- 언론개혁시민연대,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어야”, 언론개혁시민연대, <<https://www.mediareform.co.kr/512193>>, 검색일: 2026. 7. 27.
- 이글루코퍼레이션, “[보안 101] 세계 최초 전면 시행 앞둔 ‘AI기본법’, 핵심 쟁점은?”, 이글루코퍼레이션, <<https://www.igloo.co.kr/security-information/%EB%B3%B4%EC%95%88-101-%EC%84%B8%EA%B3%84-%EC%B5%9C%EC%B4%88-%EC%A0%84%EB%A9%B4-%EC%8B%9C%ED%96%89-%EC%95%9E%EB%91%94-%E3%80%8Cai%EA%B8%B0%EB%B3%B8%EB%B2%95%E3%80%8D-%ED%95%B5%EC%8B%AC-%EC%9F%81/>>>, 검색일: 2026. 4. 2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뢰성 개발 안내서”,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41>>, 검색일: 2026. 7. 14.
- 페블러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팀, “연방이 캘리포니아 AI 학습 데이터 공개법을 3년간 멈춘다”, Pebblous, <<https://blog.pebblous.ai/blog/great-american-ai-act-preemption/ko/>>, 검색일: 2026. 7. 28.
-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뉴욕주 인공지능 안전법”, 한국법제연구원, <<https://klri.re.kr/Platform/law/translated/ade1d32d-8b45-4b1c-8dcc-dc9bf64c3827>>, 검색일: 2026. 7. 23.
- AI Watermark Cleaner, “캘리포니아 SB 942: 미국 AI 워터마크 법안 해설”, AI Watermark Cleaner, <<https://aiwatermarkcleaner.com/blog/california-sb-942-ai-watermark-law/>>, 검색일: 2026. 7. 28.
- e-GOV法令検索,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七年法律第五十三号)”, e-GOV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3>>, 검색일: 2026. 7. 27.
- 経済産業省, “AI事業者ガイドライン検討会”, 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ai_shakai_jisso/index.html>, 검색일: 2026. 7. 27.
- 内閣府,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AI法案)概要”, 内閣府, <https://www.cao.go.jp/houan/pdf/217/217gaiyou_2.pdf>, 검색일: 2026. 7. 27.
- 光股知裕, “日本におけるAI新法とは? 法案の内容を解説【法案全文DLあり】”, Prospire Lawoffice, <htt

- ps://prospire-law.com/articles_internetit/25041001/>, 검색일: 2026. 7. 27.
-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http://www.cac.gov.cn/2023-07/13/c_1690898327029107.htm>, 검색일: 2026. 4. 24.
- Allison Mollenkamp, “Bipartisan AI draft proposes three-year preemption of state laws”, Roll Call, <<https://rollcall.com/2026/06/04/bipartisan-ai-draft-proposes-three-year-preemption-of-state-laws/>>, 검색일: 2026. 7. 27.
- Brian Weckerly & Jim Niedelman, “Key to Illinois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s could be independent safety reviews”, FOX 2 now, <<https://fox2now.com/news/illinois/key-to-illinois-artificial-intelligence-regulations-could-be-independent-safety-reviews/>>, 검색일: 2026. 7. 13.
-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SB-942 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2023-2024): Senate Bill No. 942, CHAPTER 291”,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ttps://leginfo.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942>, 검색일: 2026. 7. 28.
- EU,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s (EU) 2016/679, (EU) 2018/1724, (EU) 2018/1725, (EU) 2023/2854 and Directives 2002/58/EC, (EU) 2022/2555 and (EU) 2022/2557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digital legislative framework,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2018/1807, (EU) 2019/1150, (EU) 2022/868, and Directive (EU) 2019/1024 (Digital Omnibus)”,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5PC0837>>, 검색일: 2026. 4. 28.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Standard Setting”,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standard-setting-overview/>>, 검색일: 2026. 7. 14.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e EU AI Act’s Transparency Rules: A Practical Guide to Article 50”,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transparency-rules-article-50/>>, 검색일: 2026. 7. 28.
-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ublishes second draft of Code of Practice on Marking and Labelling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commission-publishes-second-draft-code-practice-marking-and-labelling-ai-generated-content>>, 검색일: 2026. 7. 28.
- European Commission, “Draft of the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certain AI system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draft-guidelines-implementation-transparency-obligations-certain-ai-systems-under-article-50-ai-act>>, 검색일: 2026. 7. 27.
- European Commission, “Drawing-up a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code-practice>>, 검색일: 2026. 7. 22.
- European Commission, “EU Icons for labelling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icons-labelling-ai-generated-content>>, 검색일: 2026. 7. 27.
- European Commission, “Harmonised Standards”, European Commission,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good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_en>, 검색일: 2026. 7. 27.
- European Commission, “Standardisation of the AI Act”, European Commiss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act-standardisation>>, 검색일: 2026. 7. 14.
- Henrique Schneider, “The AI Act: The EU’s serial digital overregulation”, GIS Reports, <<https://www.gisreportsonline.com/r/ai-act-eu-regulation-innovation/>>, 작성일: 2024. 10. 10.
- Hugo Grattirolo, “The AI Transparency Code Of Practice”, Philip Lee LLP, <<https://www.philiplee.ie/the-ai-transparency-code-of-practice/>>, 검색일: 2026. 7. 27.
- Jadzia Pierce et al., “10 Takeaways: European Commission Draft Guidelines on AI Transparency under the EU AI Act”, Covington, Inside Global Tech, <<https://www.insideglobaltech.com/2026/05/12/10-takeaways-european-commission-draft-guidelines-on-ai-transparency-under-the-eu-ai-act/>>, 검색일: 2026. 7. 27.

- Justin Hendrix, “Unpacking the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f 2026”, Tech Policy Press, <<https://www.techpolicy.press/unpacking-the-great-american-artificial-intelligence-act-of-2026/>>, 검색일: 2026. 7. 27.
- Justine Gluck, “Frontier AI Goes Federal: How the Great American AI Act Compares to State Laws”, Future of Privacy Forum, <<https://fpf.org/blog/frontier-ai-goes-federal-how-the-great-american-ai-act-compares-to-state-laws/>>, 검색일: 2026. 7. 23.
- Mina Narayanan et al., “Unpacking the White Hous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I”, CSET, Georgetown University, <<https://cset.georgetown.edu/article/unpacking-the-white-house-national-policy-framework-for-ai/>>, 검색일: 2026. 7. 27.
- Nuno Sousa e Silva,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ritical Overview”,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937150>, 작성일: 2024. 7. 30.
- Office of Rep. Lori Trahan, “Section-by-Section Summary: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Discussion Draft)”,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s://trahan.house.gov/uploads/dfiles/gaaia_discussion_draft_section-by-section.pdf>, 검색일: 2026. 7. 28.
- Richart Ruddle, “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Measures Act”, Captain Compliance, <<https://captaincompliance.com/education/artificial-intelligence-safety-measures-act/>>, 검색일: 2026. 7. 13.
- The White House,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3/03.20.26-National-Policy-Framework-for-Artificial-Intelligence-Legislative-Recommendations.pdf>>, 검색일: 2026. 7. 27.
-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 Unveils National AI Legislative Framework”,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6/03/president-donald-j-trump-unveils-national-ai-legislative-framework/>>, 작성일: 2026. 3. 20.
- U.S. Congress, “S.1396 – Content Origin Protection and Integrity from Edited and Deepfaked Media Act of 2025”, Congress.gov,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396/text>>, 검색일: 2026. 7. 28.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f 2026 (Discussion Draft), H. R. 11, 119th Congress, 2D Session”, Politico, <<https://www.politico.com/2026/06/04/obernolte-trahan-ai-draft>>, 검색일: 2026. 7. 28.

연구보고서

- 김현경·김민주, “EU 인공지능법 및 위원회 지침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비교·분석 및 인공지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26.
- 송선미·유혜정, “OSP의 책임 제한에 관한 입법 동향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기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6.
- 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22.
- 김소담, “EU의 범용 AI 실천 강령: 시스템적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KISDI Perspectives, August 2025 No.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
- 김윤명,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입법적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24.
- 김태형, “AI위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소비자정책동향, 제140호, 한국소비자원, 2024.
- 김태형·김재영,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주요내용과 소비자정책의 과제”, 소비자정책동향, 제145호, 한국소비자원, 2025.
- 박준우, “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 초안(1차) 공개”, 이슈리포트 2026-2, 한국저작권위원회, 2026.
- 손휘용,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 저작권동향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 양혜원, “OSP의 책임과 소리바다 사건”, SW 지적재산권 동향, SW IP Report 제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 이경복·박태현, “AI-사이버 우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SW중심사회, Vol. 143,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2026.
- 이정아, “일본 AI 정책·전략의 새로운 출발과 전환점, 「AI 추진법」-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은 무엇인가? -”, THE AI REPORT 2025-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 이중희,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에 대한 분석: 배경과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 이철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범용 AI 실천 강령의 첫 번째 초안 발표”, 이슈리포트 2024-35,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별 ICT 시장동향: 중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4.
- 정준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안을 위한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월간동향분석”, 2025년 제12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2025. 6. 4.)”,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2025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 AI 戦略会議・AI 制度研究会, “中間とりまとめ”, 2025年 2月 4日, 内閣府, 2025.
- 総務省・経済産業省, “AI事業者ガイドライン(第1.2版)”, 経済産業省, 2026.
- Arnold P. Lutzker, “Primer on the Digital Millennium”,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99.
- European Commission,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6.
- European Commission, “Draft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certain AI systems under Article 50 of Regulation (EU) 2024/1689 (the ‘AI Act’)", European Commission, 2026.
- European Commission, “First Draft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5.
- European Commission, “Second Draft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European Commission, 2026.
- UK 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National AI Strategy”, Command Paper 525, HM Government, 2021.